

2021. 6.30 개정

## 현금IC카드 가맹점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합니다)”란 은행에서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급하거나 현금인출 기능을 등록한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말하며, 모바일현금카드를 포함합니다.
- ② “서비스”란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금을 가맹점 [결제단말기](#)에서 사용자가 현금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모바일현금카드”란 사용자가 은행으로부터 스마트폰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y Module)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전용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말합니다.
- ④ “가맹점”이란 [결제단말기](#)를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자의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⑤ “[결제단말기](#)”란 가맹점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설치한 유·무선단말기([핀패드](#) 포함) 등을 말합니다.
- ⑥ “이용자”란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3조(현금카드의 범위)

가맹점이 본 서비스로 거래할 수 있는 현금카드는 은행과 금융결제원 현금카드 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합니다)이 발급하거나 현금인출기능을 등록한 카드로 하며 이용 가능한 현금카드의 범위는 은행과 참가기관이 정합니다.

### 제4조(입금계좌의 개설)

- ① 가맹점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를 은행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제1항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금카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1. 현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차별 취급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은 이용자가 결제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4.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다른 현금카드 가맹점 명의로 현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하여서는 안됩니다.

6. 현금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현금카드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가맹점은 [결제단말기](#)(핀패드 포함)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현금카드 거래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핀패드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6조(은행 준수사항)

은행은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현금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입금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서 거래대금을 결제합니다. 다만, 은행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7조(거래방법)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현금카드를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현금카드의 명의인 본인인지 여부, 현금카드의 진위 여부,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당해 현금카드가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현금카드 발급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핀패드(모바일현금카드는 전용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거래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은행과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가맹점은 제1항에 의한 거래승인이 완료된 경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과 거래고유번호, 가맹점명, 가맹점관리번호,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등 은행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된 영수증(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8조(거래의 취소)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의 취소, 반품 등의 사유로 현금카드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결제단말기로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일이 경과한 후 제1항의 거래취소로 인해 반환되어야 할 대금은 가맹점 입금계좌로부터 이용자 계좌로 즉시 이체됩니다.

③ 가맹점은 입금계좌의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거래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가맹점의 책임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9조(거래대금 입금)

은행은 현금카드 거래대금을 거래일의 익영업일(은행 영업일 기준)에 가맹점 입금계좌에 입금합니다.

#### 제10조(가맹점수수료)

- ① 가맹점은 현금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통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수수료는 제9조의 거래대금 입금시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제11조(가맹점 표시물)

- ① 가맹점은 은행이 정하는 가맹점 표시 등을 가맹점 내외에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 표시 등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제12조(도난, 분실 및 위·변조 현금카드 거래에 대한 책임)

- ① 가맹점은 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현금카드에 의한 거래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또는 손실의 부담 등 책임을 져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현금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당해 카드의 이용자 본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 2. 현금카드상 명의인의 성명과 카드 자체의 성질, 형상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자와 당해 카드 이용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
  - 3. 가맹점이 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현금카드와 관련된 거래에 공모, 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현저한 부주의로써 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현금카드로 인한 거래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제13조(이용자와의 분쟁)

- ① 현금카드에 의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분쟁은 가맹점과 이용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이용자와 현금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4조(변경통지)

가맹점은 은행에 신고한 가맹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은행에 서면 등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 ① 은행은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통지 후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가맹점이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은행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5. 가맹점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신청, 폐업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6. 가맹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민원발생 정도가 심각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은행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가맹점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6조(양도금지 등)

가맹점은 이 가맹점 계약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매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7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은행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이용자도 이용자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거래불성립 및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8조(효력의 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은 가맹점에 대하여 계좌만료 1개월 전까지 약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였음과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됨을 통지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9조(신용정보 제공)

- ① 은행은 정당한 현금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제 정보를 가맹점 승인 및 관리업무상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③ 가맹점과 이용자간 현금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약관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본 통지나 게시에는 제2항의 취지를 명시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통지하거나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가맹점이 적용예정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2. 가맹점이 제14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아 개별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③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결제원의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